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산업재해 원인조사 범위 확대〉

■ 이용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445호)

2025. 1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산업재해 원인조사 범위 확대	2

I. 제안경위

2025년 8월 27일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대재해에 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재해조사의견서를 통해 산업재해 원인 조사를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이 규정하는 중대재해만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현행 제도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이라는 목적에 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음. 이에 산업재해에 대한 조사의 대상을 중대재해로 이어지기 쉬운 “추락·화재·폭발·매몰·무너짐·질식·중독·화학물질 노출·폭염 작업 등으로 인해 1명 이상의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재해”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6조).

Ⅲ. 검토의견

1. 산업재해 원인조사 범위 확대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산업재해 발생 원인조사 대상인 ‘중대재해’에 ‘추락·화재·폭발·매몰·무너짐·질식·중독·화학물질 노출·폭염 작업 등으로 인해 1명 이상의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재해’까지 포함하여 조사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6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56조(산업재해 원인조사 등) ① - -----다음 각 호의 산업재해가----- ----- ----- -----. 1. 중대재해 2. 추락·화재·폭발·매몰·무너 짐·질식·중독·화학물질 노출 ·폭염 작업 등으로 인해 1명 이상의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 병자가 발생한 재해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
<신 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u>중대재해가</u>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u>중대재해</u>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④ <u>중대재해가</u>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원인조사의 내용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u>하는 산업재해</u> ② -----<u>제1항의 산업재해가</u>----- ----- ----- -----. ③ -----<u>제1항의 산업재해</u>----- ----- ----- -----. ④ <u>제1항의 산업재해가</u>----- ----- ----- -----.
---	---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중대재해 발생원인을 조사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 조사 대상을 중대재해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법이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이라는 목적에 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 따라 그 범위를 확장하려는 취지임.

개정안은 현행법이 중대재해를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①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②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이 발생하거나 또는 ③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로,¹⁾ 중대재해로 발생한 결과의 측면에 중점을 두어 인명 피해의 정도로 정의한 한계를 보완하여 산업재해의 원인이 되는 사고의 유형으로 조사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산업재해 원인조사의 주요 목적인 ‘산업재해 예방정책 수립’의 관점에서 더 많은 산업재해 사례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여 유의미한 결론 도출을 기대할 수 있다는데 입법의 의의가 있음.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조사 대상이 되는 산업재해의 범위가 크게 확장될 것으로 보여 조사를 직접 수행하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나 조사를 지원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원인력 및 예산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이라는 목적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사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에 공감하나, 세부 사고 유형을 법에 규정할 경우 사고 유형에 따라 조사 필요성이 상이함에도 모두 조사해야 하는 행정력 부담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확대 범위는 하위법령

1) 제2조(정의)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에 위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545